

---

# 2024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제2차 공모안내

---

2024. 6.



# 목 차

## I. 사업 개요

1. 목적 .....	1
2. 사업내용 .....	2
3. 추진체계 .....	2
4. 추진절차 .....	3

## II. 신청방법 및 절차

1. 지원대상 및 조건 .....	4
2. 신청기간 및 방법 .....	6

## III. 평가 및 선정

1. 평가방법 및 기준 .....	7
2. 선정 및 안내 .....	8
3. 사업관리 .....	8

## IV. 유의사항

1. 적용 규정 .....	9
2. 기타 유의사항 .....	9

## V. 문의처

1. 사업문의 .....	11
2. 인증관련 문의 .....	11

# I 사업 개요

## 1. 목적

- 생성형AI, 자율주행 등 AI·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데이터 품질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
- ※ (1) AI사업운영 시 기업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은 'AI 인력 부족' 다음으로 '데이터 품질문제' 제기('22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, '23.4, 국가통계 제127016호)
- (2) AI분야 기업은 사업 수행의 주요 애로사항이 데이터 품질(44.6%)이라고 응답 (국내 AI관련 기업부설연구소 현황과 애로사항 분석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'21년)
- 데이터를 생산·유통·활용 중인 중소·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지원하여,
-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등 데이터 기반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데이터 유통·거래 활성화

###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안내

<b>소개</b>	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·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0조)								
<b>인증대상</b>	기업이 유통·활용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기준(ISO/IEC 25024, 5259-2, 8000-62)에 따라 <sup>1</sup> 데이터 내용, <sup>2</sup> 데이터 구조, <sup>3</sup> 데이터 관리체계를 심사 1) 데이터 내용 : 데이터 레코드, 필드에 입력 되어있는 문자, 숫자 등 데이터의 값 2) 데이터 구조 :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개념적, 논리적, 물리적 데이터 모델 3) 데이터 관리체계 : 데이터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업무 기능, 조직, 프로세스 체계								
<b>운영절차</b>	과기정통부장관이 요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을 지정·관리, 인증기관은 인증신청·접수, 심사, 인증서 발급 등 수행				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b>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</b>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50px; text-align: center;">과기정통부 인증기관 지정공고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50px; text-align: center;">과기정통부 인증기관 심사·지정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50px; text-align: center;">인증기관 인증 신청·접수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50px; text-align: center;">인증기관 인증심사 심사보고서 작성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50px; text-align: center;">인증기관 인증서 발급·관리</div> </div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b>데이터 품질인증 수행(상시)</b></p> </div> </div>									
<b>활용방안</b>	데이터 품질인증서는 <b>품질증명, 거래 신뢰성 확보, 내부 품질관리 진단, 마케팅</b> 등 활용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목적</th> <th>세부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검증</td> <td>정부과제, 프로젝트, 용역 등 산출물 품질증명</td> </tr> <tr> <td>전략</td> <td>고품질 데이터 확보, 성과지표 활용, 내부 품질관리 계획 수립</td> </tr> <tr> <td>마케팅</td> <td>기업 이미지 역량 홍보자료 활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목적	세부 내용	검증	정부과제, 프로젝트, 용역 등 산출물 품질증명	전략	고품질 데이터 확보, 성과지표 활용, 내부 품질관리 계획 수립	마케팅	기업 이미지 역량 홍보자료 활용
목적	세부 내용								
검증	정부과제, 프로젝트, 용역 등 산출물 품질증명								
전략	고품질 데이터 확보, 성과지표 활용, 내부 품질관리 계획 수립								
마케팅	기업 이미지 역량 홍보자료 활용								
<b>인증기관</b>	(주)씨에이에스, (주)와이즈스톤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정('23.7.6.)								

## 2. 사업내용

- (사업명) 2024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(이하 '지원사업')
- (지원규모)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57개사(예산소진시 까지)
- (지원내용) 데이터 품질인증기관\*이 수행하는 품질인증 비용을 최대 1,150만원(VAT 제외) 지원,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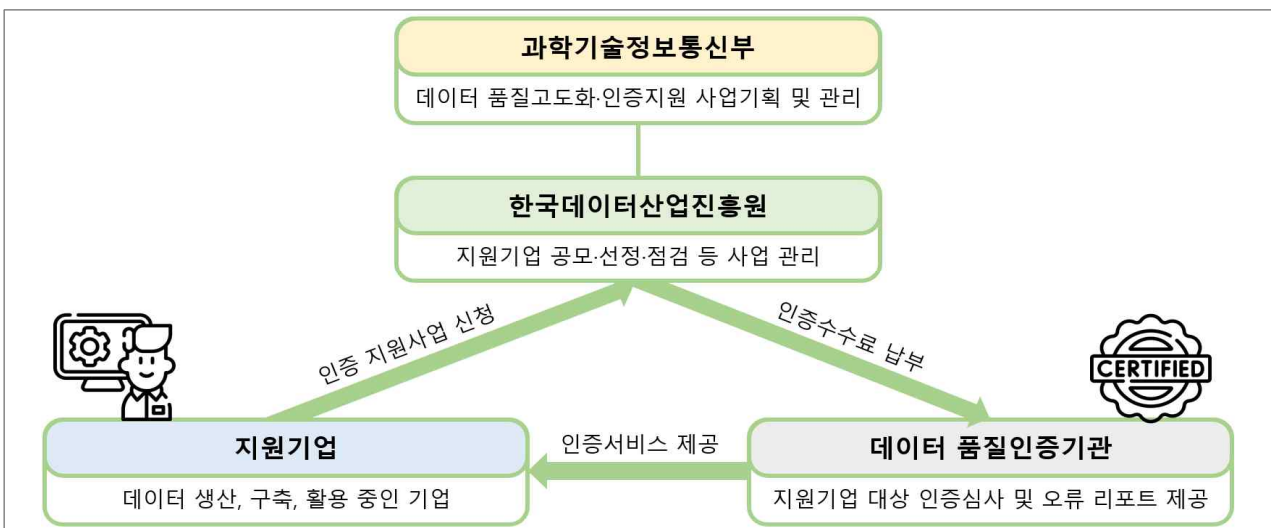
\* 「데이터산업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

### <(요약)지원사업 지원조건 >

- ▶ 본 사업은 민간부담금 50% 기준으로 지원(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50%)
- ▶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(견적받은 인증비용 중 1,150만원 한도로 지원)와 현금(견적받은 인증비용 중 정부지원금 1,1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) 또는 인건비 현물(인증심사 대응,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선에 참여하는 지원기업 인력 인건비)로 구성
- ▶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지원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증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

## 3. 추진체계

### <추진체계>



- ▶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, 품질인증제도 운영 총괄(이하 과기정통부)
- ▶ (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 세부계획 수립, 공모·협약·사업관리, 제도 운영지원(이하 K-DATA)
- ▶ (지원기업)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, 심사 대응, 심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류 데이터 품질 개선 등 품질관리활동 수행
- ▶ (데이터 품질인증기관) 인증협약, 품질인증 수행 및 데이터 품질개선 방안 제시

□ 추진절차

공고	지원사업 공고	'24.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기정통부, K-DATA, 인증기관 홈페이지 공고</li> </ul>	
	↓			
선정 평가	인증협의	'24.6월이후 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증상담 및 견적서 수령(신청기업↔인증기관)</li> <li>※ 인증기관과 인증 협의, 견적서 수령 후 제출</li> </ul>	
	↓			
	신청서 접수	'24.6월이후 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접수(신청기업→K-DATA)</li> </ul>	
	↓			
요건평가 / 사업성평가		'24.7월이후 격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신청자격, 제출서류 적정성 평가(K-DATA)</li> <li>인증 지원 기대효과, 지원 필요성 등 평가(K-DATA)</li> </ul>	
		↓		
선정 통보		'24.7월이후 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기업 및 인증기관에 선정 통보(K-DATA)</li> </ul>	
↓				
사업 수행	지원사업 협약		'24.7월이후 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자 협약 체결(K-DATA↔지원기업↔인증기관) 및 정부 지원금 선금(70%) 지급(K-DATA→인증기관)</li> </ul>
	↓			
	인증획득		협약일로부터 '24.12월 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품질인증 및 데이터 품질 개선(지원기업)</li> <li>※ 인증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인증 실시</li> </ul>
	↓			
	이행점검		협약기간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수행 및 이행점검(K-DATA)</li> </ul>
↓				
사업 결과평가		'24.10월~ 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증 획득 여부 확인, 품질개선 수준평가 및 사업 기대 성과 조사(K-DATA) ※ 월별 1회, 총 3회 개최</li> </ul>	
↓				
비용 지원		'24.11월~ 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지원금 잔금(30%) 지급(K-DATA→인증기관)</li> <li>※ 인증획득 여부 확인, 사업 결과평가 후 지급</li> </ul>	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II 신청방법 및 절차

### 1 지원대상 및 조건

- (지원대상) 데이터를 생산·유통·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

<지원대상>

구분	세부내용
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*에 해당하는 기업</li> <li>*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</li> </ul>
초기 중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3항, 「중견기업법」 제8조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3,000억원 미만인 기업</li> <li>* 초기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</li> </ul>

- (지원조건)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데이터 유형, 인증 획득 가능 여부, 비용 등 인증협의를 진행하고, 민간부담금 조건을 확인

<지원내용 및 조건>

구분	세부내용						
인증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민간 기업이 보유한 '정형데이터', '비정형데이터', '데이터 관리체계'</b>*</li> <li>* 생산·유통·활용 데이터를 보유, 관리하는 프로젝트(조직·정보시스템 등 포함)의 품질 관리 우수성을 심사하여 인증</li> <li>▶ <b>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획득 가능 여부, '24.12월 이내 인증심사 완료 가능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하여야 함</b></li> <li>※ 인증기관과 협의 및 [서식3] 인증협약서 서류 제출</li> </ul>						
민간부담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민간부담금) 총사업비(인증비용+민간부담금)의 최소 50%로 구성</li> <li>▶ (인증비용) 신청기업이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받은 견적 금액 기준</li> <li>▶ (민간부담금 인정범위) 현금 및 현물 인정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인정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현금</td> <td>• 견적서 내 인증비용의 정부지원금(1,150만원) 초과 비용</td> </tr> <tr> <td>현물</td> <td>• 인증심사 대응, 데이터 품질개선 등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인력 인건비(인건비는 인력에게 실제 지출되는 급여로 산정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예시) 민간부담금 구성 방법</p> <p>① (인증비용이 11.5백만원인 경우) 총사업비는 23백만원으로, 인증비용 11.5백만원은 정부지원금, 민간부담금은 11.5백만원</p> <p>ex) A데이터에 대한 인증 견적 금액이 11.5백만원인 경우 K-DATA가 인증기관에 11.5백만원 지급, 지원기업은 사업기간(5개월) 중 데이터 인증 대응, 오류데이터 개선을 위해 참여한 고용인력의 인건비 11.5백만원 증빙을 K-DATA에 제출</p>	구분	인정범위	현금	• 견적서 내 인증비용의 정부지원금(1,150만원) 초과 비용	현물	• 인증심사 대응, 데이터 품질개선 등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인력 인건비(인건비는 인력에게 실제 지출되는 급여로 산정)
구분	인정범위						
현금	• 견적서 내 인증비용의 정부지원금(1,150만원) 초과 비용						
현물	• 인증심사 대응, 데이터 품질개선 등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인력 인건비(인건비는 인력에게 실제 지출되는 급여로 산정)						

- ⑥ (인증비용이 34.5백만원인 경우) 총사업비 34.5백만원으로, 인증비용 중 11.5백만원은 정부지원금이며,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인증비용 23백만원은 지원기업이 현금으로 부담
  - ex) B데이터에 대한 인증 견적 금액이 34.5백만원인 경우 K-DATA가 인증기관에 11.5백만원 지급, 인증비용 23백만원은 지원기업이 인증기관에 납부하고 지급한 23백만원에 대한 증빙(입금증 등)은 K-DATA에 제출
- ※ 우리 진흥원은 민간부담금 구성, 수행계획서 내 작성방법에 대해 온오프라인 안내 진행, 관련 사항은 'V.사업문의'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

○ (제외 대상)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-226호) 제9조제2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

<지원 제외 대상>

구분	세부내용
지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li> <li>5.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</li> <li>나.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 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</li> </ul> </li> <li>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</li> <li>7.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</li> <li>8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</li> </ol>
기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과 관련하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</li> <li>2.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</li> <li>3.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</li> <li>4. 지원 여부 결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지원 결정 취소 가능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</li> <li>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등</li> </ul> </li> <li>5.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이 K-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K-DATA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</li> </ul> </li> <li>6. 그 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</li> </ol>

## 2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'24.6.11.(화) ~ 예산소진시까지
- (신청방법)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(dq@kdata.or.kr)
  - ※ 신청 후 신청접수 확인 메일을 받은 경우 신청·접수가 완료되며, 신청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로 문의 요망 / 방문·우편 접수 불가
  - ※ 메일 제목은 **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신청(기업명)** 형식으로 작성하고,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이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
- (제출서류) 신청정보, 기업정보,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

<사업신청 시 제출서류>

구분	서류명	내용
신청정보 확인	사업 신청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1]
	사업수행계획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4]
	인증협약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3] ※ 인증기관과 인증 시기,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
	인증견적서	▶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견적서
	지원요건 적정성 확인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2]
	지원요건 준수 확약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5]
	민간부담금 확약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6]
	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	▶ K-DATA 별도 서식[서식7]
기업정보 확인	사업자등록증	▶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	법인등기부등본	▶ 법원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발급신청
	중소기업확인서	▶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발급신청
	중견기업확인서 (해당시)	▶ 중견기업 정보마당(mme.or.kr) 발급신청 ※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용도
납세 확인	국세 완납증명서	▶ 홈택스(hometax.go.kr) 발급신청
	지방세 완납증명서	▶ 정부24 또는 위택스(wetax.go.kr) 발급신청
	4대보험 완납증명서	▶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 발급 신청
	재무제표	▶ 초기 중견기업 직전년도 매출 규모 확인용

※ 공모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불인정

### III 평가 및 선정

#### <지원기업 선정 평가절차>



## 1. 평가방법 및 기준

- (요건평가) 신청기업의 자격, 제출서류의 적정성, 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Pass/Fail 방식으로 평가되며 사업성 평가와 상관없이 탈락

#### <요건평가 주요 확인사항>

- ▶ 신청기업이 지원대상(중소기업, 초기 중견기업)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
- ▶ 제출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
- ▶ 제출요구 서류의 필수 작성항목에 대한 누락 여부
- ▶ 인증기관과 협의 및 인증 획득 가능 여부
- ▶ 기타 지원 제한 대상 여부(휴폐업, 채무불이행, 부정당 제재, 정부사업 참여 제한 대상, 신청일 기준 '24년도 K-DATA 지원사업을 2개 이상 수행 중인 기업 등)

- (사업성 평가)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, 인증협의서 등을 기반으로 인증지원에 대한 기대효과, 사업성 등 평가

#### <평가항목 및 평가내용>

평가항목	평가내용
인증지원 타당성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의 부합성</li> <li>▶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인증 획득 필요성</li> </ul>
데이터 사업성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, 데이터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중요성</li> <li>▶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을 통한 기업활동 계획</li> </ul>
지원 기대효과(4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증획득을 통해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(예시) 데이터 유통 확대,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등</li> <li>▶ 데이터 품질개선에 따라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(예시) 매출증대, 서비스 품질 향상,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 등</li> </ul>

- (평가방법) 요건 및 사업성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

<평가방법>

평가항목	평가내용
평가위원회	▶ 데이터 사업·기술·품질 및 법률 분야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
평가결과 집계 방법	▶ (요건평가)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▶ (사업성 평가) 평가결과 총점(100점) 기준으로 최고·최저점을 제외,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를 산출

## 2. 선정 및 안내

- (지원대상 선정) 요건평가를 충족하고 사업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 실시
  - ※ 1차 공모를 통해 인증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2차 공모에 1차 공모와 다른 데이터로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(선정 통보)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협약 준비 사항 및 향후 일정을 유선(문자 및 이메일)으로 안내

## 3. 사업관리

- (선정 후 절차)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 후 K-DATA, 인증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,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및 품질관리를 수행

< 추진절차 >

①3자 협약체결(K-DATA, 지원기업, 인증기관) ⇨ ②정부지원금 선금 지급(K-DATA → 인증기관)
⇨ ③인증 심사자료 제출(지원기업 → 인증기관) ⇨ ④인증 심사(인증기관 → 지원기업)
⇨ ⑤심사결과 오류 데이터 개선(지원기업) ⇨ ⑥인증서 발급(인증기관 → 지원기업)
⇨ ⑦지원기업 민간부담금 이행 및 인증획득 여부 점검(K-DATA)
⇨ ⑧정부지원금 잔금 지급(K-DATA → 인증기관)

- ※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·사업 이행점검, 성과조사 및 홍보 등 K-DATA가 사업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해야 함

- (사업관리) K-DATA는 사업기간 중 지원기업의 인증획득, 민간부담금 납부 및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기업은 적극 협력해야 함

<사업관리 내용>

평가항목	평가내용
민간부담금 이행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증서류 제출, 심사 대응, 오류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인력의 인건비(현물) 집행 여부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참여인력의 재직 여부,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 여부 확인</li> </ul> </li> <li>▶ 인증비용이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부 여부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금증 등 별도 회계정산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
사업 수행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증 획득 여부, 인증 전후 데이터 품질개선 활동 수행 여부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활동 수행 여부 방법 및 제출서류는 향후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

※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을 미이행하거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심사 비용은 지원기업이 납부하여야 함

## IV 유의사항

### 1. 적용 규정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지침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 및 세부지침
  - ※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,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

### 2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(공모안내서, 기타 관련 사항 등)에 대하여 신청 전 완전히 확인·숙지하여야 하며, 확인·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

- 제출서류가 공모 및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은 제출요구 서류의 누락, 제출 서류 파일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) 등으로 인해 협약 및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은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 이후에는 인증기관 변경이 불가함
- 신청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인증 진행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K-DATA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
-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미체결, 협약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 지원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발생한 인증비용은 지원기업에서 부담
- 지원기업은 인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사업 수행종료 때까지 데이터 보유기업으로서의 지위 및 보유 현황 등에 변동이 없어야 함
- 정부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할 수 있음
-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K-DATA의 자료요청, 이력 관리 및 성과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V 문의처

### 1. 사업문의

- (신청 상담) 사업 내용, 신청절차 및 방법, 사업비 산정(민간부담금 구성 및 수행계획서 내 기재방법), 평가 등
- (담당 부서)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유통지원단 유통기획팀
  - (☎ 사업문의 전화) 02-3708-5341 / 02-3708-5345
  - (✉ 사업문의 이메일) kyg77@kdata.or.kr

### 2. 인증관련 문의

- (인증 상담) 인증대상 데이터 적합여부, 인증심사 가능여부, 인증 심사 기준, 인증심사 일정 협의, 인증비용 견적서 발급 등
- (전화상담 시간) 오전 10시 ~ 오후 5시까지

<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연락처>

기관명	☎ 전화	✉ 이메일	🌐 홈페이지
(주)씨에이에스	02-6748-4960	dqc@casit.co.kr	test.casit.co.kr
(주)와이즈스톤	02-2039-3155	data@tecel.kr	dq.tecel.kr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	010-5112-0183	dq@tta.or.kr	cs.tta.or.kr